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본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서울형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조례에 규정하고,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주요 내용으로는 “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”란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의(안 제2조 제2항 신설)하고,

서울시주민자치회 회장단협의회를 지원(안 제4조 제4호 신설)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
-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동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